

하였다고 하다.

위 원 장 : 제1호 안건인 2019학년도 등록금 심의에 대하여 등록금 동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김계영 위원 : 등록금동결에 동의하다.

김준호 위원 : 김계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위 원 장 : 김계영 위원의 동의와 김준호 위원에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위원장은 2019학년도 등록금을 2018학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알리다.

이어서 제2호 안건인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박현석 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박현석 위원 : 2018학년도 추경예산은 41,006,743천원으로 본예산 39,784,851천원 대비 1,221,892천원 증가하였음을 설명하고 수입과 지출별 세부적인 증감액 및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

위 원 장 : 제3호 안건인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서유석 위원 :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동의하다.

김종엽 위원 : 서유석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위 원 장 : 서유석 위원의 동의와 김종엽 위원의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위원장은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알리다.

이어서, 제3호 안건인 2019학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박현석 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박현석 위원 : 2019학년도 예산 수입 및 지출은 각각 41,683,764천원으로 2018학년도 추경예산 대비 677,021천원 증가하였음을 설명하고 수입과 지출별 세부 사항을 설명하다.

위 원 장 : 제3호 안건인 2019학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서유석 위원 : 홍보비예산 규모와 내역에 대해 묻다.

박현석 위원 : 홍보비는 30여억원 규모로 편성되어있다고 설명하고 대부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로 되어있다고 추가 설명하다.

서유석 위원 : 2019학년도 예산(안)에 동의하다.

정용용 위원 : 서유석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위 원 장 : 서유석 위원의 동의와 정용용 위원의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김종엽 김계영 김준호 서유석
김현석 정용용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위원장은 2018학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알리다.

이어서, 제4호 안건인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와 관련하여 박현석 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박현석 위원 : 매년 본 위원회에서 잉여금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 잉여금 처리원칙을 심의해야 함을 설명하고 잉여금 처리원칙 내용을 설명하다.

위원장 : 제4호 안건인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김필원 위원 : 잉여금 처리원칙에 동의하다.

김계영 위원 : 김필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위원장 : 김필원 위원의 동의와 김계영 위원의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위원장은 잉여금 처리원칙이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하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 안건이 있는가를 묻다.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종료 선언하다.

7. 폐 회

위원장이 다른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 하니 오후 15시 40분이 되다.

2019년 1월 28일

위원장 : 전 광 호

호

위원 : 김 준 호

위원 : 김계영 (인)

위원 : 김 종 엽

위원 : 김 필 원

위원 : 박 현 석

위원 : 서 유 석

위원 : 정 응 용

가

(가나다순)

제4호 안.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의 건

잉여금처리 원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회계 상의 잉여금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잉여금이란 본예산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원칙)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학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부항목)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세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지급
2. 교육콘텐츠 질 향상
3. 학생활동 지원
4. 교육환경 개선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호 안. 기타안건

공공융합정보통신 김계영. 김평환 서명
심판권자 김대환 - 박준우